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작성과 운영

본협회 조사부

본협회에서는 지난 9월 20일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발간, 업계에 보급할 예정이다. 이번에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발간하게 된 것은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공정거래 제도를 운영하는데 필요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는데 참고가 되도록 하자는 데 있다. 책자 내용은 제1부에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필요성, 그리고 준수 프로그램의 기초가 되는 준수편람의 작성요령, 운영방법 및 사후관리제도 등을 설명하고 제2부에서 공정거래법의 해설, 사전처리과정과 위반시 제재조치 제3부는 실제로 기업이 만들게 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표준모형을 제시하고, 외국기업에서 실제로 운영되고 있는 일립전기(주)의 자율준수편람과 미국의 Allied Signal사의 Compliance Series 등 외국의 독점금지법 자율준수편람 사례를 참고자료로 실었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주요내용을 소개하기로 한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의의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이란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자율적으로 준수하기 위하여 사내에 도입하는 제도로서 ① 회사의 공정거래법 준수에 관한 원칙의 천명 또는 선언, ② 이러한 정신에

따라 회사와 종업원 개개인이 위험을 최소화 하는 방법에 관한 지침을 포함해서 잠재적인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과 이에 따른 위험관리를 위한 구체적인 공정거래법 준수지침을 담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③ 준수편람의 내용에 관한 보다 실질적인 이해를 돕고, 특정행위의 적법성여부를 판단하는데 도움을 주고 준수프로그램의 운영방법을 확실하게 이해시키기 위한 종업원들과 경영진의 교육, ④ 공정거래법 위반여부에 관한 최종판단을 담당하는 자문부서의 설치와 공정거래법과 관련된 분쟁에 대비한 서류의 파기 또는 보존을 기록하는 기록보존 프로그램의 확립과 준수 프로그램의 계속적 이행을 준비하는 것 등을 포괄하는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가장 중요한 부분은 준수편람의 작성이다.

기업의 실정에 맞는 준수편람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기업의 경영활동내용에 대한 파악과 이와 관련한 공정거래법 위반 가능성이 있는 분야를 조사해야 한다. 따라서 준수편람의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요령과 준수편람의 구성, 내용, 작성방법 등을 소개하고자 한다.

1. 준수편람 작성을 위한 실태조사

실태조사란 기업의 전반적이고 잠재적인 공정거래법의 위반가능성에 대하여 조사하는 것으로 ① 조직이 어떤 분야에서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 취약한지를 조사하고, ② 조직에 적합하고 효과적인 준수 프로그램을 구성하고 실행하기 위한 분야를 결정하고, ③ 전문가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조직의 어떤 분야가 공정거래법과 민감한 관계에 있는지를 찾아내는 데 목적이 있다. 실태조사 방법은 조직의 문서와 행위에 대한 검토와 기업의 핵심인물과의 인터뷰를 통해 이루어지는데 가능한한 외부 전문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2. 준수편람의 작성

실태조사를 완료하게 되면 효과적인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작성하게 되는데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구성은 일반적으로 ① 공정거래법을 준수한다는 최고경영층의 의사표명과 의지 천명, ② 공정거래법의 취지, 내용, 사건처리 절차, 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설명, ③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지 않기 위한 구체적인 행동지침과 문제발생시의 대처방법 등이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첫번째 필요조건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려는 기업의 의지를 분명히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최고경영자에 의해 서명된 서문을 자율준수편람의 첫부분에 넣고, 여기에서 조직의 방침이 공정거래법에 따르는 것이라고 밝히고 공정거래법을 다룰 때의 기업전체와 종업원 각자의 이점과 따르지 않을 때의 위험에 관해 약속한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두번째 부분은 공정거래법의 취지, 내용, 사건처리절차, 위반시 제재조치 등에 대한 설명으로 공정거래법에 관한 기본개념과 내용을 알리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이 부문은 공정거래법 준수라는 기업의 방침을 따르기 위해 기업이 위반할 가능성이 있는 행위, 예를 들면 가격담합, 고객이나 상품시장의 분할, 공동의 거래거절 등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조직과 개인 모두에게 위반시 부과될 수 있는 형사상 또는 민사상의 제재조치에 대한 간단한 설명을 포함한다.

마지막 부분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보다 실무적인 부분으로서 실제문제에 관한 공정거래법상 민감한 영역을 기술하는 것이다. 공정거래법상의 정신과 내용을 준수하려는 조직의 방침이 종업원들의 일상적인 행위를 중심으로 강조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경쟁자와의 모임에서 논의되어서는 안되는 것과 그런 화제가 나왔을 때 취해야 하는 행동에 관한 간단한 행동지침을 제시하는 등 경쟁자들과의 어떠한 모임도 위험이 될 수 있음을 강조해야 한다.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두번째 부분은 법률해석 중심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세번째 부분은 기업이 당면하는 잠재적인 법 위반행위를 종업원들이 실제로 접하게 되는 상황에 비추어 작성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성방법에 따라 작성된 준수편람의 표준적인 목차(예시)는 다음과 같다.

- ① 공정거래법 준수의 필요성
 - A. 회사의 방침
 - B. 사회적, 경제적 필요
 - C. 위반시 회사 및 개인의 피해
- ② 공정거래법의 취지와 내용
 - A. 공정거래법의 개요
 - B. 공정거래법 위반시 제재조치
- ③ 구체적인 행동지침
 - A. 경쟁업자와의 관계
 - 1. 공동행위
 - a. 공동의 거래거절

- b. 시장 및 고객분할
- c. 공동의 가격결정·유지
- d. 공동행위를 위한 정보교환
- e. 공급물량 및 생산제한
- f. 공동의 거래조건 제한
- g. 공동판매법인 설립
- 2. 사업자단체활동
 - a. 경쟁제한
 - b. 불공정거래행위
- B. 납품업자 또는 공급업자와의 관계
 - 1. 단독의 거래거절
 - 2. 상호거래(reciprocity)
 - 3. 특수불공정거래행위(백화점업)
 - 4. 구입카르텔
 - 5. 하도급거래 계약
 - a. 제조하도급
 - b. 건설하도급
- C. 유통업자와의 관계
 - 1. 단독의 거래거절
 - 2. 상호거래
 - 3. 끼워팔기
 - 4. 수직적 거래제한
 - a. 재판매가격유지
 - b. 판매지역제한
 - c. 배타조건부거래
 - d. 판매물량강제
 - e. 기타 판매방법제한
 - 5. 가격차별
 - 6. 우월적 지위의 남용
 - 7. 대리점 또는 유통관계 계약
 - 8. 기타 차별적 취급
 - 9. 부당염매
 - 10. 경쟁사업자 배제
 - 11. 거래강제
- D. 계열기업과의 관계

- 1. 계열기업의 차별적 취급
- 2. 부당한 내부거래
- E. 소비자와의 관계
 - 1. 표시·광고
 - 2. 경품제공
 - 3. 할인특매
 - 4. 유인판매
 - 5. 부당한 고객유인
- F. 기타
 - 1. 기업결합 및 경제력 집중 억제
 - a. 기업결합의 제한
 - b. 지주회사의 설립금지
 - c. 상호출자의 금지
 - d. 출자총액의 제한
 - e. 금융·보험회사의 의결권제한
 - f.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의 제한
 - g. 금융 및 보험회사의 의결권 제한
 - h. 대규모 기업집단의 불공정거래행위
 - 2. 시장지배적 지위의 남용금지
 - a. 가격남용행위
 - b. 판매조절행위
 - c. 사업활동방해
 - d. 경쟁제한행위
 - e. 소비자권익침해
 - 3. 국제계약상의 불공정거래행위
 - a. 기술도입계약
 - b. 저작권도입계약
 - c. 수입대리점계약

공정거래법 준수프로그램의 운영

- 1. 사내교육

일단 준수편람이 작성되면 이를 전 사원에게 배포하여 숙지시키고, 신입사원 교육이나 사원연수 등의 과정에 이를 포함시키는 것도 유용한 방

법이다. 교육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은 공정거래제도에 관한 교육과정을 개설하여 정기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업무분야별·직급별 특성을 고려하여 구분 실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준수편람에서 다루지 못했던 구체적인 내용설명, 자기기업 또는 경쟁기업들이 당면하거나 경험했던 사례, 불확실한 상황에 직면했거나 범위반행위에 가담했을 경우의 대처방법 및 공정거래법 위반시의 법적제재 등에 대하여 교육 또는 연수과정에서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면 준수편람의 이해증진에 상당한 도움이 된다. 또한 교육시에 기업의 공정거래제도 준수 자세 및 정책을 제시하기 위해서 경영자의 훈시도 필요할 것이다.

2. 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 확보조치

회사에서 시행중인 공정거래법 준수지침을 불이행하여 범위반행위를 저지르고 이것으로 인해 시정조치를 받는 등 불이익을 주는 종업원에 대해서 회사내부적으로 징계조치를 마련하는 것은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의 실효성을 확보해주는 좋은 방법이 된다. 미국에서는 지침에 따르지 않고 범위반행위를 하여 회사에 피해를 주는 사원에 대해서는 징계처분 또는 경우에 따라서는 해고까지 시키는 경우도 있다. 공정거래법 준수의 실효성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같은 조치를 마련해 둘 필요가 있다.

미국의 경우 준수편람을 배포받은 직원들은 이것을 충분히 숙지하였고 이에 따라 행동하겠다는 내용의 서약서를 회사당국에 제출하도록 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때때로 조직이 준수 프로그램을 이행하지 못하여 범위반행위를 저지른다면 경영진이나 종업원에 의해 서명된 서약서를 공정거래사건에서 조직전체의 책임이 없었다는 사실을 입증하는데 사용될 수 있다.

3. 사내자문기구의 운영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 또는 이를 위한 준수편람은 공정거래법을 준수하기 위한 일반적인 가이드라인일 뿐으로 그 자체가 행위의 위반 여부를 판별해주는 최종적인 수단은 아니라는 사실이다. 따라서 공정거래법에 관한 보다 실무적이고 구체적인 사안은 법률전문가의 조언에 따라야 한다. 이러한 사내자문기구는 거래계약단계나 영업방식을 결정하기 전에 자문을 하여 사전적으로 공정거래위반을 예방하고, 문제가 발생했을 때 이를 해결하는 임무를 띄게 된다. 기업활동의 대부분이 공정거래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기업활동 중에 공정거래법에 위반되는지의 여부에 대하여 담당사원이 곤란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사원들이 소극적으로 범위반을 두려워하여 활발한 기업활동을 펼치지 못하게 되는데 이러한 장애를 극복하기 위하여 사내에 공정거래법 관련 문제에 대하여 상담할 수 있는 상담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필요하다. 이러한 상담체계가 있으면 문제에 당면한 사원이 상급자에게 상의하고 여기서 해결할 수 없을 때에는 기업내의 법무부문과 상담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이와 관련하여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에 조직의 공정거래와 관련한 법률조언을 얻는 절차를 포함시키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사내에 이러한 전문부서를 두는 것이 어렵거나 사내기구가 판단하기 어려운 사항은 외부전문가의 조언을 듣거나 공정거래위원회와 사전에 상담을 하는 것도 유용한 방법이다.

4. 기록보존 프로그램의 운영

공정거래 기록보존 프로그램의 중요성은 문서상의 증거가 막연하거나 공정거래당국이나 사건신고인에 대한 반증자료가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할 것이다. 기록보존 프로그램이 있으면 기업이

공정거래법을 위반하여 조사를 받게 되는 경우 소송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문서를 만들기 위해 과거의 수많은 서류들을 파헤칠 필요가 없다. 전문가의 지도하에 체계적으로 보존된 기록은 문제가 발생했을 때에는 참고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즉시 회수될 수 있어야 한다.

기록보존 프로그램에 따라 보존해야 할 기록에 대하여 예시를 하면 어떤 공급자나 고객들과는 공동으로 거래를 거절하는 행위에 불참하게 된 경영자의 결정 내용(경쟁기업들 사이에서 공동의 거래거절에 참여했다는 담합을 반박하기 위해)을 들 수 있다. 또한 기록보존 프로그램은 경쟁기업과 만난 구체적인 날짜, 시간, 장소와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가에 대한 보고서를 종업원들로 하여금 작성하도록 한다. 경쟁자와 만난 것에 대한 보고서를 작성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종업원들에게 자신을 보호하고 종업원이 인지하지 못한 위험을 사내전문가에게 알려주는 데 그 목적이 있다.

5. 준수 프로그램의 계속적 관리

일단 준수프로그램이 정착되면 공정거래법 자율준수 프로그램이 효과적으로 운영되도록 하여야 한다. 프로그램의 각 분야가 지속적으로 실시되는지 계속 감시되어야 하고,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교육은 기존의 직원들에게는 재충전 과정이 되고 신입직원들에게는 신규교육과정으로써 규칙적인 기초위에서 반복되어야 한다.

6. 자율준수 프로그램 운용 사례

독금법을 운영하는 외국의 많은 대기업이 이미 이러한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1993년부터 삼성전자와 LG그룹, 쌍용건설과 유공, 대우자동차, 그리고 포항제철과 삼성소비자문화원 등 일부 대기업에서 이러한 프로그램을 제정하여 운용하고 있다. ■



업계의 자율적인 실천노력을 지원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

자유롭고 공정한 경쟁질서는 정부의 규제 등에 의해서 준수되어 지는 것보다는 기업이 자율적으로 준수하도록 하는 풍토조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본책자에는 유통구조 및 거래행태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을 쉽게 작성할 수 있도록 준수편람의 작성 요령과 사내에서의 정착 방법, 공정거래법 해설, 표준공정거래법 자율준수편람의 작성, 그리고 외국의 준수편람 사례 등을 소개한 것으로서 공정거래법 자율준수프로그램을 운영하고자 하는 기업에게 길잡이가 될 것입니다.

· 구입 안내전화 775-8870 / 팩스 775-8873